

2020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강생)

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가.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각종 신청종류

구 분	내 용	수수료
학습자 등록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 하는 것(최초 1회)	4,000원
학점인정신청	시간제등록 및 독학학위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1학점 당 1,000원
학위신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 중 학위신청을 하는 것	없음

다. 2020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개인 신청)	19.12.16(월) ~ 20.01.31(금)	04.01(수) ~ 04.29(수)	06.15(월) ~ 07.31(금)	10.05(월) ~ 10.30(금)
대구보건대학교 기관 접수 (단체 신청)	19.12.16(월) ~ 20.01.9(목)	04.01(수) ~04.10(금)	06.15(월) ~07.9(목)	10.05(월) ~10.14(수)

※ 동일분기 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접수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람(추후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2. 교육일정 및 장소

가. 수업기간 : 2020년 4월 2일(목) ~ 6월 25일(목)

수업회차	수업일자	시간	수업형태	비고
1	2020. 4. 2(목)	18:30~21:30	비대면 수업	과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2	2020. 4. 9(목)	18:30~21:30	휴강	6. 18(목) 18:30~21:30 보강
3	2020. 4. 16(목)	18:30~21:30	정상 출석 수업	
4	2020. 5. 21(목)	18:30~21:30	정상 출석 수업	
5	2020. 6. 25(목)	18:30~21:30	정상 출석 수업	

나. 실습기간 : 2020. 04. 03(금) ~ 06. 21(일)

다. 지도교수 및 강의실

분반	지도교수 성명	강의실	비고
1반	이기량	인당관 7610호	
2반	박영주	인당관 7613호	
3반	임윤용	인당관 7508호	

3. 실습 의뢰 협조 공문 관련 안내

가. 실습기관으로 발송하는 실습 의뢰 협조 공문은 개강일 익일[4/3(금)]에 실습처로 팩스 발송 예정

나. 실습일지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에 실습처 직인을 받아 **3회차 4.16** 수업 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도록 함

4.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안내

페이지	제출 서류명	제출 내용 및 방법	회신여부
p.25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을 4. 3(금)에 발송 예정 절취 후 작성하여 제출	4. 16(목) 수업 시 담당교수님께 제출
p.101~105	실습평가서	절취 후 실습지도자가 평가할 것 (실습지도자 및 직인 날인)	실습종료 후 7일 이내에 평생교육원 으로 제출
p.107,109	현장실습 확인서 (2부)	절취 후 2부 작성하여 모두 제출 할 것(실습지도자 및 직인 날인)	
일지전체	실습일지	공란 없이 빠짐없이 작성할 것	

※ 제출된 실습일지는 평생교육원 성적 평가 자료 보관용이며 반환하지 않음

5. 성적평가 및 일정

가. 성적평가 배점비율

전 공 명	과 목 명	배 점 비 율(100)				
		기관평가	실습일지	출석	과제	수업참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50	20	10	10	10

※ 중간·기말고사 별도 없음

나. 성적열람

- 열람기간 : 2020. 6. 29(월) ~ 2020. 7. 1(수)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를 문자 발송 → 로그인

다. 성적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0. 6. 29(월) ~ 2020. 7. 1(수)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홈페이지 로그인 → 성적이의 신청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수업연기로 성적 이의 신청기간이 짧아짐을 양해 바라며, 신청 기간 경과 후 접수가 불가함

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안내

가. 본인 거주 지역 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에 개인 신청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구지부 : 053-986-9881

7. 환불 안내

가.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적용

나.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 [표1] 참조

8. 평생교육원 문의처

가. 전화번호 : 053-320-1285

나. 팩스번호 : 053-320-1286

다. 사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아트센터 302호

라. 홈페이지 주소: <http://cec.dhc.ac.kr>

9.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 준수

가. 실습생 본인

- 개인 위생 감염 예방 규칙(마스크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사항 준수

나. 실습기관의 감염예방 규칙 요구(미 준수시)

- 위생환경 철저
-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기타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증상(유사증상 포함) 발현 시, 대학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마시고, 본원으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실습 중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실습의 차질이 있는 경우 본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 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경과	반환하지 않음

[표2]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1.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 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120시간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12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교과목 및 추가되는 교과목

가. 이수연도(2020. 1. 1 시행일 이전, 시행일 이후)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나.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 : 2020. 1. 1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가. 기관실습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①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 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나. 실습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다.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등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